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95-6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95. 12.

제 출 자 : 정원경의원 외 1인

1. 제안이유

- 자치구의회의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승격코자 정원이 승인되고 관련직급 및 직위가 변경됨에 따라 95년12월22일자로 달서구의회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이 심의 의결되므로써 관련조례인 본조례를 개정코자 함.

2. 관련근거

- 기획12200-1085('95. 12. 19) 자치구의회 「사무과」의 「사무국」 정원승인

3. 주요골자

- “의회사무과장”을 “의회사무국장”으로 자구 수정함(안제2조)
-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자구 수정함(안제4조, 제6조, 제8조)
- “의회사무과”를 “의회사무국”으로 자구 수정함(안제5조)

4. 개정조례(안) : 따로 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(안)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 제3호중 “의회사무과장”을 “의회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중 [별표] 공인의 규격 제4호중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중 “의회사무과에서”를 “의회사무국에서”로 한다.

제6조중 “사무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1항, 제2항중 “사무과장에서”를 “사무국장에게”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6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.
- ②(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 제3조 제2항중 “의회사무과”를 “의회사무국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
제2조(종류)		제2조(종류)	
① (생략)		① (현행과 같음)	
② (생략)		② (현행과 같음)	
1~2. (생략)		1~2. (현행과 같음)	
3. 대구광역시달서구 <u>의회사무과장</u>		3. <u>의회사무국장</u>	

현행	개정
<p>제5조(교부 및 등록) 공인은 <u>의회사무과</u>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,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교부 및 등록).....<u>의회사무국</u>에서.....</p>
<p>제6조(관리) 공인은 <u>사무과장</u>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.</p>	<p>제6조(관리).....<u>사무국장</u>.....</p>
<p>제8조(재교부 및 폐기)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<u>사무과장</u>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<u>사무과장</u>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재교부 및 폐기) ①.....</p> <p>.....<u>사무국장</u>에게.....</p> <p>②.....</p> <p>.....<u>사무국장</u>에게.....</p>
<p>[별표] 공인의 규격</p> <p>1~3. (생략)</p> <p>4. 달서구의회 <u>사무과장</u> 직인 : 정부관인 규정 별표 그 직인의 규격 준용</p>	<p>[별표] 공인의 규격</p> <p>1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<u>사무국장</u>.....</p>